

수원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단532659 판결 [잔여리스료 및 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변 론 종 결 2024. 1. 31.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35,543,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24. 3. 13.까지는 연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43,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변경된 청구원인에 의해 소장에서 매매대금 26,1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던 부분은 철회되었다), 갑 1 내지 10호증,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잔여리스료 지불완료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 당시 기존 리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리스기간은 2015. 12.부터 2017. 11.까지 24개월, 향후 피고가 납부할 리스료는 총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선급금으로 11,000,000원 및 매월 5,923,949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1. 26.부터 2017. 12. 1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5,289,609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표] 피고 입출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대출거래종류	입금액(원)	계좌/예금주
1	2015-11-26	가상계좌수납	11,000,000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주)C
2	2015-12-18	가상계좌수납	5,964,165	"

3	2016-01-18	가상계좌수납	5,971,925	#
4	2016-02-05	가상계좌수납	5,923,949	#
5	2016-03-11	가상계좌수납	5,923,949	#
6	2016-04-15	일반수납	6,625,112	국민 (계좌번호 2 생략) (주)C
7	2016-05-19	가상계좌수납	5,923,949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주)C
8	2016-06-07	가상계좌수납	5,923,949	#
9	2016-07-06	가상계좌수납	5,923,949	#
10	2016-08-05	가상계좌수납	5,923,949	#
11	2016-08-31	무통장수납	1,306,099	국민 (계좌번호 2 생략) (주)C
12	2016-08-31	무통장수납	5,074	#
13	2016-09-07	가상계좌수납	5,923,949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주)C
14	2016-09-08	무통장수납	5,149	국민 (계좌번호 2 생략) (주)A
15	2016-10-05	CMS수납	5,923,949	(계좌번호 3 생략) (주)A
16	2016-11-07	CMS수납	5,923,949	#
17	2016-12-05	CMS수납	5,923,949	#
18	2017-01-05	CMS수납	5,923,949	#
19	2017-02-06	CMS수납	5,923,949	#
20	2017-03-06	CMS수납	5,923,949	#
21	2017-04-05	CMS수납	5,923,949	#
22	2017-05-08	CMS수납	5,923,949	#
23	2017-06-05	CMS수납	5,923,949	#
24	2017-07-05	CMS수납	5,923,949	#
25	2017-08-07	CMS수납	5,923,949	#
26	2017-09-05	CMS수납	5,923,949	(계좌번호 4 생략) (주)A
27	2017-10-10	CMS수납	5,923,949	#
28	2017-11-06	CMS수납	1,735,606	#
29	2017-11-10	CMS수납	4,197,499	#

30	2017-12-13	CMS수납	5,952,480	#
합계			155,289,609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1회 2014. 7. 5. 납입~48회 2018. 6. 5. 납입까지 48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스케줄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의 48회차 납입후 잔액에 대해서

리스보증금으로 상계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묵시적으로 승계가 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갑 3, 4호증, 을 1호증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리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피고가 리스료를 완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가사 잔여리스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 ·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 당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7. 11. 종료되었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인바, 원고가 2023. 5. 2. 피고를 상대로 잔여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의 승계당시 합의에 따라 2017. 11.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1회 2014. 7. 5. 납입 ~ 48회 2018. 6. 5. 납입까지 48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2018. 6. 5. 종료되어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35,543,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¹⁾ 이 판결선고일인 2024. 3. 13.까지는 약정에 의한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6069 유체동산인도 원고 청구기각 ㉠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나91732 유체동산인도 항소기각)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 2014. 6. 5.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머시닝센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50,000,000원, 계약보증금: 26,120,500원, 리스기간: 48개월(3개월 거치기간), 리스물건가격: 250,000,000원, 리스이자율: 연 7.8%,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료: 1~3회 1,625,000원, 4~48회 5,923,949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1회 2014. 7. 5. 납입일자 ~ 48회 2018. 6. 5. 납입일자

(2)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리스이용자인 D은 원고에게 정해진 리스료를 매월 납부하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리스계약서에는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방법으로 '무상 양도', '반환', '취득원가의 %로 양도', '기타'의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취득원가의 약 10.44%로 양도'가 선택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원고는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2015. 8.경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313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2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 D은 이후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F, G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5) 한편, 피고가 2015. 11.경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50,000,000원(11,000,000원은 선지급하고 잔액 139,000,000원은 11월 25일부터 36개월간 매월 3,861,000원씩 지불하기로 한다)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6.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8.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매월 약 59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로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피고가 2015. 11. 26.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리스로 등의 합계액은 150,924,641원에 이른다).

(6) 수원지방법원 2022나91732 유체동산인도 사건의 판결에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1.경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가 작성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에 대한 원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1.경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5. 11. 26.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로 미납채무에 충당하였고, 2015. 12. 18.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약 590만 원정도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까지 별도로 생성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5. 6.경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중도해지 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D 및 피고를 상대로 별다른 계약해지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15. 6.경 이후 해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15. 11.경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21. 2.경까지 약 5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 리스료 등이 완납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고 나아가 그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는 2015. 11.경 H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리스계약서에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방법으로 '무상 양도', '반환', '취득원가의 %로 양도', '기타'의 4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취득원가의 약 10.44%로 양도'가 선택된 것으로 기재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를 즉시 발생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이 그 리스기간이 경과되어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2021. 5.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취득원가의 약 10.4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된 무렵 또는 피고의 2021. 5. 2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무렵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이 그 리스기간의 경과로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22. 5.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 리스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수원지방법원 2022나91732 유체동산인도 사건의 판결에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미납 리스료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권리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대여(리스)계약 표준약관 제1조는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리스이용자를 말한다)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갑(리스회사를 말한다)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중략),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금융리스의 실질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리스기간이 종료한 후 리스물건의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면 그 이익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하는 점,

③ 리스회사의 해지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리스기간이 그대로 종료한 경우와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리스회사의 불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한 점,

④ 리스료를 일부 미납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매수할 경우, 리스회사로서는 미납 리스료를 포함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리스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납 리스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채 리스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리스계약상 리스료를 완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21. 5.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취득원가의 약 10.4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2021. 5. 24.자로 송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1. 5. 24.자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할 금원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리스계약상 리스료를 완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제42회 2017. 12. 5.까지만 납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제43회 ~ 제48회 6회분 금35,543,694원(=5,923,949원×6) 및 위 금원에 대해 마지막 48회 납입일자인 2018. 6. 5.부터 연체이자 10.8%(리스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은

24%이나,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해 정상이자 7.8%의 +3% 가산}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 및 판결선고일부터는 소촉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1. 5. 24.자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취득원가의 취득원가의 약 10.44%인 금26,1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금26,1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해 2021.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6%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청구취지의 금원을 청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경위

소장 제1항을 원용합니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할 금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리스계약상 리스료를 완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제42회 2017. 12. 5.까지만 납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제43회 ~ 제48회 6회분 금35,543,694원(=5,923,949원×6) 및 위 금원에 대해 마지막 48회 납입일자인 2018. 6. 5.부터 연체이자 10.8%(리스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은 24%이나,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해 정상이자 7.8%의 +3% 가산) 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 및 판결선고일부서는 소촉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의 금원을 청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